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6. 2.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 8. 12. 서왕진의원 등 13인

나. 회부일자: 2024. 8. 13.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 11. 20.) 상정 · 제안설명

· 검토보고 · 대체토론 · 소위원회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중소기업소위원회(2025. 9. 11.) 상정

제2차 중소기업소위원회(2025. 9. 22.) 상정

제3차 중소기업소위원회(2025. 11. 18.) 상정 · 축조심사

제4차 중소기업소위원회(2025. 11. 20.) 상정 · 축조심사 · 의결(수정
가결)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 11. 21.) 상정 · 소위심사
보고 · 찬반토론 · 의결(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서왕진의원)

기술보증기금은 2022년 5월부터 기후대응기금 출연금을 재원으로 탄소감축 성과가 있거나 감축 잠재력이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보증 지원을 해오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기후대응보증사업은 「기후대응기금 운용관리규정」(기획재정부 고시)에 따라 보증사업의 수행기관으로 기술보증기금이 지정되어 있을 뿐, 사업수행에 관한 직접적인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기후대응보증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법상 기술보증기금의 업무에 다른 법률에서 기금이 수행하도록 하는 업무를 추가하며 그 예산은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관리·운용하도록 함으로써, 기후대응보증사업 수행을 위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유인규)

개정안은 기술보증기금의 업무에 ‘다른 법률에서 기술보증기금이 수행하도록 하는 업무’를 추가하고 업무 수행을 위한 별도의 계정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8조).

현행법¹⁾은 기술보증기금의 업무로 기술보증, 보증연계투자, 중소기업팩토링 등을 규정하고 있음.

기술보증기금은 이러한 업무 외에도 「문화산업진흥기본법」²⁾ 등 다른 법률에서 기술보증기금이 수행하도록 규정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1) 제28조(기금의 업무)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본재산의 관리
2. 기술보증
3. 신용보증
- 3의2. 보증연계투자
4. 기업에 대한 경영지도 및 기술지도
- 4의2. 중소기업 기술보호
- 4의3. 기술신탁관리(「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술신탁관리업을 말한다)
5.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의 종합관리
6. 기술평가(해당 기술과 관련된 기술성·시장성·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금액·등급·의견 또는 점수 등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7. 구상권(求償權) 행사
8. 신용보증제도의 조사·연구
9. 중소기업팩토링
10.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제4호, 제4호의2, 제4호의3 및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업무

② 기금은 제1항의 업무 외에 재보증업무 및 유동화회사보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2)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0조의2(완성보증계정의 설치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상품의 제작 및 문화산업에 대한 투자의 활성화를 위하여 완성보증업무를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기관에 완성보증계정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2.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개정안과 같이 다른 법률에 따라 기술보증기금이 수행하는 업무를 기술보증기금의 업무로 명시하면, 기술보증기금의 업무범위에 대한 국민의 이해가능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됨.

다만, 개정안은 다른 법률에서 기술보증기금이 수행하도록 하는 업무의 수행을 위한 별도의 계정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현행 법에 따르면 기술보증기금의 기본재산을 조성하는 정부출연금은 중소기업부 소관³⁾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다른 법률에서 기술보증기금이 수행하도록 한 업무의 경우 해당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 소관으로 출연하는 근거도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개정안에 대해 중소기업부는 기술보증기금이 현재 수행 중인 타부처의 업무를 더욱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기술보증기금의 업무에 타 법률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를 추가하는 것에 동의하며,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별도 계정도 기본재산에 포함되는 것으로 오인하거나 예산 소관을 혼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수행에 따른 정부 출연금의 예산은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으로 하도록 규정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음.

3) 「기술보증기금법」 제13조(기본재산의 조성) ① 기금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1. 금융회사등의 출연금
2. 정부의 출연금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자의 출연금

② 제1항제2호의 정부의 출연금의 예산은 중소기업부 소관으로 한다.

참고로, 기술보증기금 및 신용보증기금에 기후대응기금 보증계정 설치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의원 대표발의)⁴⁾이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인 점과,

다른 법률에서 신용보증기금이 수행하도록 하는 업무를 신용보증기금의 업무에 추가하고, 이에 따른 정부 출연금의 예산은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으로 하도록 규정하려는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의원 대표발의)⁵⁾이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인 점을 참고하여 개정안을 심사할 필요가 있겠음.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 김원이 위원)

개정안에 따라 기술보증기금의 업무 중 다른 법률에서 기금이 수행하도록 하는 업무의 추진을 위하여 설치된 별도 계정 출연금 예산 소관을 중소벤처기업부가 아닌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하는 단서 조항을 추가 신설하여 개정안 취지를 보완하려는 것임(제13조제2항 단서 신설)

4) [의안번호 2202713] 2024.8.12. 발의, 2024.8.13. 환경노동위원회 회부

5) [의안번호 2202725] 2024.8.12. 발의, 2024.8.13. 정무위원회 회부

6. 심사결과

수정가결

7.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내용

체계·자구심사를 거쳤음(원안의결).

※ 심사보고서 붙임서류

1.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2.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5. 11. .

제안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개정안에 따라 기술보증기금의 업무 중 다른 법률에서 기금이 수행하도록 하는 업무의 추진을 위하여 설치된 별도 계정 출연금 예산 소관을 중소기업부가 아닌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하는 단서 조항을 추가 신설하여 개정안 취지를 보완하려는 것임(제13조제2항 단서 신설)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3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8조제1항제11호의 업무 추진을 위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28조제4항의 계정에 출연받는 경우 해당 계정은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으로 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13조(기본재산의 조성) ① (생략) ② 제1항제2호의 정부의 출연금의 예산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으로 한다.	제13조(기본재산의 조성)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u><단서 신설></u>	제13조(기본재산의 조성) ① (개정안과 같음) ② ----- ----- ----- ----- <u>다만, 제28조제1항제11호의 업무 추진을 위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28조제4항의 계정에 출연받는 경우 해당 계정은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으로 한다.</u>
③ · ④ (생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③ · ④ (개정안과 같음)
제28조(기금의 업무)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 10. (생략)	제28조(기금의 업무) ① ----- ----- ----- 1. ~ 10. (현행과 같음)	제28조(기금의 업무) ① ----- ----- ----- 1. ~ 10. (개정안과 같음)

<u><신 설></u> ② · ③ (생 략) <u><신 설></u>	<u>11. 그 밖에 다른</u> <u>법률에서 기금이</u> <u>수행하도록 하는</u> <u>업무</u>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기금은 제1항제 11호에 따른 업무 수행을 위하여 별 도의 계정을 설치 할 수 있다.	11. (개정안과 같음) ② · ③ (개정안과 같음) ④ (개정안과 같음)
--	--	--

법률 제 호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술보증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8조제1항제11호의 업무 추진을 위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28조제4항의 계정에 출연받는 경우 해당 계정은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으로 한다.

제28조제1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기금이 수행하도록 하는 업무

④ 기금은 제1항제11호에 따른 업무 수행을 위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치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기본재산의 조성) ① (생략)	제13조(기본재산의 조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제2호의 정부의 출연금의 예산은 중소기업부 소관으로 한다. <단서 신설>	② ----- ----- ----- <u>. 다만, 제28조제1항제11호의 업무 추진을 위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28조제4항의 계정에 출연받는 경우 해당 계정은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으로 한다.</u>
③ · ④ (생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28조(기금의 업무)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 10. (생략) <신설>	제28조(기금의 업무) ① ----- ----- 1. ~ 10. (현행과 같음) <u>11.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기금이 수행하도록 하는 업무</u>
② · ③ (생략) <신설>	② · ③ (현행과 같음) <u>④ 기금은 제1항제11호에 따른 업무 수행을 위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치할 수 있다.</u>